## 2025년 「경영위기 소상공인 재기지원(폐업지원)」 모집 공고

충청남도와 (재)충남경제진흥원에서는 도내 소상공인의 폐업부담 경감을 위해 「경영위기 소상공인 재기지원(폐입지원)」참여업체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> 2025년 6월 2일 (재)충남경제진흥원장

### 1. 사업개요

□ **신청기간 :** '25. 6월 2일 ~ 예산 소진시 까지

□ 지원규모 : 70업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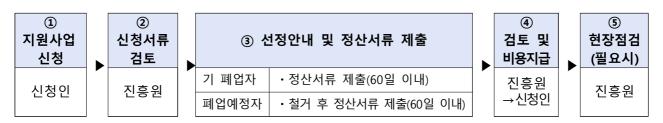
□ 지원대상 : 22년 1월 1일 이후 폐업 소상공인 또는 25년 중 폐업예정 소상공인

#### <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>

제2조(정의) "소상공인"이란 충청남도에 사업장을 둔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.

- ※ 소상공인 범위: (광업·제조업·건설업 및 운수업)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/ (그 밖의 업종) 상시근로자 5인 미만
- ※ 주업종 판단기준: 부가가치세과제표준증명(또는 수입금액증명)에 명시된 업종

#### □ 지원절차



# 2. 지원내용

# □ 점포철거비 지원 ※ 지원 한도 초과금액 및 부가세는 소상공인이 부담

지 원 항 목	지원한도
• 철거, 원상복구 비용, 사업장 양도 수수료 및 양도에 따른 광고비지원 등	300만원

<sup>\*</sup> 지원금은 위 기준 내에서 실제 철거에 소요된 비용 지원(전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)

## □ 지원제외 대상 아래 제외사항에 1개라도 해당되는 경우 지원 제외

구 분	세부내용
① 자가건물 및 무상임차	<ul><li>임대차 계약이 아닌, 자가 소유건물에 사업장 운영하는 경우</li><li>무상으로 임차계약서를 작성한 경우</li></ul>
② 유사사업 수혜자	•점포철거 지원에 관한 정부 및 지자체 유사 사업의 수혜를 받은 경우 예)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3~25년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 폐업지원 등
③ 주거 용도 건축물	•사업장 소재지의 건축물대장상 '주택', '아파트' 등 주거용도 목적의 건축물인 경우 (단, 숙박업 중 민박의 경우 지원 가능)
④ 사업장 이전	·폐업이 아닌, 사업장 이전인 경우 ·폐업 후 동일 장소에 재창업한 경우
⑤ 자력철거	·사업자등록 되어있는 업체를 통해서 철거한게 아닌 자력철거 한 경우
⑥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점	·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
⑦ 입출금 불가능	• 본인 또는 법인 명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자
⑧ 제외업종	<ul> <li>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 제외(고유번호증 소지자)</li> <li>소상공인 지원제외 업종</li> <li>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</li> <li>*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으로 판단</li> <li>**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제출 필수</li> </ul>

## 3. 제출서류 및 지원절차

#### □ 제출서류

구분	제출서류
공통서류 ( <mark>신청시 제출</mark> )	• [서식 1] 지원신청서
	• [서식 2] 개인정보 수집·이용 제공 동의서
	• [서식 3] 지원사업 참여 확약서
	• 폐업사실증명원(폐업자)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(폐업예정자)
점포철거비 증빙서류 (정산시 제출)	• [서식 4] 점포철거 완료 확인서
	• 임대차계약서
	• 전자세금계산서(철거업체 발행)
	• 계좌이체 이체확인증 또는 카드내역서
	• 신청인 통장사본
	• 점포철거 견적서
	• 거래처(철거업체) 사업자등록증

- •신청서류 검토 후, 신청인에 소요비용 지급(최대 300만원)
  - 부가세 지원 제외, 견적서에 부가세 별도 표기 필수
  - 견적서 상 공급가, 계좌이체내역 또는 카드거래내역 기준 지원
  - 사업정리비용 현금거래 시 지원불가
- ·거래처 사업자등록증 상 공사 관련 업종이 되어있어야 하며, 견적서 상 구체적 철거공사내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
- ※ 철거관련 업종(예시): 건물 및 구축물 해체공사업(42110), 철골 공사업(42131) 등

## 4.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

□ **신청방법**: 충남경제진흥원 통합지원시스템(https://www.cnsp.or.kr/main.do) 신청·접수

#### □ 선정절차 유의사항

- 신청단계 서류 제출 대상자 중 중복지원 조회(월 2회 내외) 이후 적격자에 한하여 정산서류 이메일 제출 요청 예정(이메일 및 문자 안내)
- \* 신청서에 작성한 이메일 및 문자 안내 예정. 발송된 시점에 안내된 것으로 판단
- ※ 지원사업 선정 이후 서류 제출 안내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외 정산서류 접수 및 비용 집행 필수
- ※ 폐업 및 철거 완료 후 정산자료 제출자에 한하여 지원
- ※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
- □ **신청자격**: 사업공고일 기준, 폐업(예정) 소상공인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
  - ▶ 『소상공인기본법』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\*으로 공고일 기준 폐업을 하였거나 25년 중 폐업 예정이어야 함
    - \* 소상공인 기준 [별첨1] 참조
    - \*\*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, 폐업일이 '22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지원 가능
  - ▶ [별첨2]의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
  - ▶ 사업자등록증(또는 폐업사실증명원)상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하여야 함
- ※ (점포철거) 유상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해야 함

#### □ 문의처

○ (재)충남경제진흥원(보부상 콜센터) ☎ 041-424-4000

#### 【별첨 1】

# 평균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

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	분류기호	규모 기준
1. 식료품 제조업	C10	
2. 음료 제조업	C11	
3. 의복,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	C14	
4. 가죽, 가방 및 신발 제조업	C15	
5. 코크스,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	C19	
6.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(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)	C20	
7.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	C21	
8.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	C23	ᆲᄀᇜᆂᅅᄃ
9. 1차 금속 제조업	C24	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
10. 금속가공제품 제조업(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)	C25	120 12 -1-1
11. 전자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	C26	
12. 전기장비 제조업	C28	
13.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	C29	
14.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	C30	
15. 가구 제조업	C32	
16. 전기, 가스,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	D	
17. 수도업	E36	
19. 농업,임업 및 어업	А	
19. 광업	В	
20. 담배 제조업	C12	
21. 섬유제품 제조업(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)	C13	
22.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(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)	C16	
23. 펄프,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	C17	
24.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	C19	평균매출액등
25. 고무제품,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	C22	80억원 이하
26. 의료, 정밀,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	C27	
27.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	C31	
28. 그 밖의 제품 제조업	C33	
29. 건설업	F	
30. 운수 및 창고업	Н	
31. 금융 및 보험업	K	
32. 도매 및 소매업	G	평균매출액등
33. 정보통신업	J	50억원 이하
34. 수도, 하수 및 폐기물 처리, 원료재생업(수도업은 제외한다)	E(E36 제외)	
35. 부동산업	L	ᆑᄀᇜᄎᅄᄃ
36. 전문・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	М	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
37. 사업시설관리,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	N	
38. 예술,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	R	
39.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	C34	
40. 숙박 및 음식점업	I	ᆑ그메ᄎ애ᄃ
41. 교육 서비스업	Р	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
42.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	Q	
43. 수리(修理)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	S	
<비고>		

<sup>&</sup>lt; 비고 > 1.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「통계법」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. 2.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(C31202)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,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(C31322)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.

# 지원제외 업종(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준용)

표준산업분류	업 종
33409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
46102 중	담배 중개업
46107 중	예술품,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
46209 중	잎담배 도매업
46333	담배 도매업 * 담배대용물(전자담배 등) 포함
46416, 46417 중	모피제품 도매업 * 단,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
46463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
47640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
47811 중	약국, 한약국
47859 중	성인용품 판매점
47911, 47912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,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
47993 중	다단계 방문판매
52991 중	통관업(관세사, 관세법인, 통관취급법인등)
56211	일반유흥주점업
56212	무도유흥주점업
58122 중	경마, 경륜,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
58211, 58212, 58219 중	도박 및 사행성, 불건전 게임 S/W 개발 및 공급업
63999 중	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
64	금융업
65	보험 및 연금업
66	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
68	부동산업 * 부동산의 임대, 구매,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,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·분양, 임대활동이 포함 * 단, 부동산관리업(6821),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(68221)은 신청가능 -부동산관리업: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(주거용·비주거용 부동산관리) -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: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,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

표준산업분류	업 종
76390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
711, 712	법무,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
731	수의업
73904 중	감정평가업
75330	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(예: 탐정업, 흥신소 등)
75993	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
75999 중	경품용 상품권 발행업,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
86	보건업 * 단, 보건업(86) 중 유사의료업(86902)은 신청가능 * 안마원(96122)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가능(통계청 기준)
91113	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
91121	골프장 운영업
9122 중	성인용게임장, 성인오락실, 성인PC방, 전화방
91221 중	성인용 게임장 운영업
91249	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
91291	무도장 운영업 (예: 댄스홀, 콜라텍 등)
9612 중	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*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 가능 -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-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
96992	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(점집, 무당, 심령술집 등)
96999 중	휴게텔, 키스방, 대화방
기타	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, 향락 등 불건전 업종, 기타 국민보건,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,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

- ※ 도소매업 중 전자담배 도매업, 성인용품소매 지원불가
  - © 산업파급효과가 적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제외업종으로 정책자금 지원이 적절치 않음
- ※ 기타: 골프연습장(91136), 스크린골프연습장(91136)은 지원 가능